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제 회)	

지 방 공 무 원 복 무 규 정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존 미성년 자녀에서 그 외의 가족까지 돌봄휴가 대상을 확대하여 일·가정 양립의 기반을 강화하고, 평일 밤샘 근무 등 고강도의 재난 대응 업무 수행 시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대체휴무를 확대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가족돌봄휴가 도입 및 자녀돌봄 사유 확대(제7조의7제9항)

1)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변경·확대

2일(2자녀 이상은 3일)이었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돌봄 휴가를 배우자·부모·조부모·손자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자녀 외 가족의 노령·사고·질병 등의 이유로 돌봐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로 변경하고 일수도 10일로 확대하고자 함. 다만, 기존 미성년 자녀돌봄 사유는 유급으로 유지하되, 그 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함.

2) 자녀돌봄 사유를 기존 사유와 함께 확대

어린이집, 학교의 휴원·휴교(감염병 등으로 인한 재택수업 등 포함), 자녀 질병·사고로 인한 돌봄 필요시에도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 장애아부모 및 한부모 공무원에 대한 배려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연 3일까지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과 같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한부모 공무원과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서도 자녀가 1명이라도 연간 3일까지 유급휴가를 부여 하도록 함.

나. 재난 대응 및 피해 수습 지원 강화

1) 대체휴무 제도 확대(제4조제2항)

평일에도 정규근무외 8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할 경우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대체휴무 사용 기한도 1주에서 6주로 확대하고자 함.

2) 재해구호휴가 신설 및 확대(제7조의7제12항)

지방자치단체별 복무조례상의 재해구호휴가를 대통령으로 상향하여 5일 범위내에서 부여하고, 대규모 재난으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10일까지 확대하여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다. 보수·수당 지급 합리화를 위한 명확한 근거 마련

1) 연가저축제 개선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인 잔여 연가 중 8시간 미만에 대해서는 차년도로 자동적으로 이월·저축되도록 함(제7조제4항).

징계처분 등이 취소되어 전년도 연가 공제분을 보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저축연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함(제7조의2제1항).

2) 사무 인계를 위한 퇴직 공무원 근무명령 근거 명시(제12조)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퇴직 공무원이 15일 한도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보수 지급의 근거를 명확히 함.

라. 기타 문구 수정

1) 공무 관련 소환시 공가 사용 가능 기관에 경찰 명시(제7조의6)

형사사건의 대부분을 경찰에서 처리하고 있음에도, 공무 관련 소환시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 예시에 경찰이 명시되지 않아 해석에 따라 공가 제도가 달리 운영될 소지가 있어 공가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 예시에 경찰을 추가하도록 함.

2) 인용 조문 번호 수정(제7조의9)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에서 “같은 영 제3조의 4제1항”을 “같은 영 제3조의5제1항”으로, “제7조의7제6항·제7항”을 “제7조의7제7항·제8항”으로 인용 조문 번호를 수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7. 7. ~ 8.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근무”로, “휴무하게”를 “휴무(이하 “대체휴무”라 한다)하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1주일”을 “6주일”로 한다.

제7조제4항 후단 중 “없다”를 “없으며,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저축한다”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단서 중 “않는다”를 “않으며, 전년도에 공제되어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연가일수만큼 저축연가일수에 추가하여 보상한다”로 한다.

제7조의6제2호 중 “그”를 “경찰, 그”로 한다.

제7조의7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녀가 있”을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가 있”으로,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공무원이 자녀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

가 1명인 경우 연간 2일,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자녀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와 공무원의 가족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는 연간 3일까지의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거나 어린이집등이 휴업 또는 휴원·휴교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나. 어린이집등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다.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거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그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공무원이 미성년자인 자녀 외의 가족으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가. 미성년자인 자녀 외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나. 미성년자인 자녀 외의 가족 중 손자녀로 인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⑫ 자연재난·사회재난 등 재난으로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가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 등으로 인하여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가 피해를 입어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하여 원활한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줄 수 있다.

제7조의9 중 “같은 영 제3조의4제1항”을 “같은 영 제3조의5제1항”으로, “제7조의7제6항·제7항”을 “제7조의7제7항·제8항”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퇴직 공무원의 실제 근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면직된 공무원을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7제9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구호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에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른 재해구호휴가를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제7조의7 제1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해구호휴가를 다시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전의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시행일까지 사용한 재해구호휴가 일수를 제외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u>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u> 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u>휴무하게</u>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u>1주일</u>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생략)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근무----- ----- ----- ----- 휴무(이하 “대체휴무”라 한다)하게 ----- ---. ----- ----- ----- ----- ----- 6주일 ----- ----- -----.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 ①
결근 일수·정직 일수·직위해
제 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결근의 경우에 한정
하여 제7조의10에 따른 저축연
가 일수를 포함한다)에서 뺀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제2항제2호에 따
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
하는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는다.

② ~ ⑦ (생략)

제7조의6(공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

----- 없으며, 연가
보상비 지급 대상 중 8시간 미
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
월·저축한다.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 ①

않으며, 전년도에 공제되어 사
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연가일
수만큼 저축연가일수에 추가하
여 보상한다.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의6(공가) -----

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생 략)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 12. (생 략)

제7조의7(특별휴가) ① ~ ⑧ (생 략)

⑨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1. (현행과 같음)

2. -----
-- 경찰, 그 -----

3. ~ 12. (현행과 같음)

제7조의7(특별휴가)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가 있-----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

1. 공무원이 자녀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가 1명인 경우 연간 2일, 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자녀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와 공무원의 가족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인 경우에는 연간 3일까지의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으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및 「초·
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
의 학교(이하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
에 참여하거나 어린이집등
이 휴업 또는 휴원·휴교
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
로 그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나. 어린이집등 교사와의 상
답에 참여하는 경우

다.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
거나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의 병
원 진료(「국민건강보험
법」 제52조에 따른 건강
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
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거나 미성년자 또
는 장애인인 자녀의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그 자
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2. 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민법」상 미성년자인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⑩ · ⑪ (생 략)

<신 설>

2. 공무원이 미성년자인 자녀 외의 가족으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가. 미성년자인 자녀 외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나. 미성년자인 자녀 외의 가족 중 손자녀로 인하여 제 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⑩ · ⑪ (현행과 같음)

⑫ 자연재난·사회재난 등 재난으로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가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 등으로 인하여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자녀가 피해를 입어 장기간 피해 수습

제7조의9(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u>같은 영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38조의15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휴가는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제7조의4제1항·제2항, 제7조의5, <u>제7조의7제6항·제7항 및 제7조의8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따른다.</u></u> <u><신 설></u>	<u>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하여 원활한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재해구호휴가를 줄 수 있다.</u> 제7조의9(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 ----- ----- ----- <u>같은 영 제3조의5제1항</u>----- ----- ----- ----- ----- ----- -- <u>제7조의7제7항·제8항</u> ---- ----- -----. <u>제12조(퇴직 공무원의 실제 근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면직된 공무원을 15일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58